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장석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4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9.

발의자 : 장석춘 · 문진국 · 서형수

주광덕 · 임이자 · 나경원

송희경 · 원유철 · 박명재

성일종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전기·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, 회수 체계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등을 통하여 재활용 활성화 및 국민편익 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,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공공집하장 부족, 폐가전제품 상·하차 지원 미흡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).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”를 “공공집하장 운영, 폐전기·폐전자제품의 상·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